

1. 개정이유

법령에 근거한 재외무관부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외무관 특별휴가 제도 운영 관련 법적근거 마련(국방부 감사), 무관활동 포상금 관련 근거 법령에 마련(국회 예결위)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 개정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주재무관의 휴가 및 일시귀국(전지휴양, 저지대 요양휴가 및 본국 위로 휴가 등)에 대한 관련 근거를 법령에 반영(국방부 감사결과 후속조치)
- 나. 반기 무관활동 평가 결과 종합 및 분야별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관련 법령에 근거 반영(국회 예결위)
- 다. 주재무관 양성 관련 책임 명시 및 추가 교육 반영
 - 1) “참모총장”을 “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”으로 개정하여 양성 책임 구체화
 - 2) 주재무관 양성 관련 어학교육 등에 “위탁교육” 추가 반영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련 부처 합의 예정(필요시)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추진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 등 협의 추진

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그리고 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
본부장이 정한다.

제1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정보본부장이 정한
다.

제19조 중 “참모총장은”을 “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위탁교육,”으
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 귀국)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15조(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 귀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그리고 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본부장이 정한다.</u>
제17조(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)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 <단서 신설>	제17조(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) ----- ----- -----, <u>단,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정보본부장이 정한다.</u>
제19조(주재무관의 양성 등) 각군 <u>참모총장은</u>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,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19조(주재무관의 양성 등) --- <u>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</u> <u>위탁교육,</u> ----- ----- ----- -----.